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윤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6년 10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정이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 설 : 6건(별표1)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시장·군수 위임사무 신설>

- (복지정책과)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1건)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등(2건)
- (교통물류과)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1건)

<사무정비 : 국가사무(규칙) → 시도사무(조례)>

- (식의약안전과)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등(2건)

○ 그 밖의 개정사항 : 6건(별표1)

<위임사무 신설(마약류도매업자 허가)에 따른 기 위임사무 정비>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무(5건)

<과 명칭 변경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산업과>

- (문화예술산업과) 조직개편('16.9.30.)에 따른 과 명칭 변경(1건)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를 반영하고, 사무정비,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복지정책과의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업무(1건), 식의약안전과의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등(2건), 교통물류과의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1건) 등을 시장·군수 위임사무로 신설하고, 식의약안전과의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 교부 등(2건)의 사무를 국가사무(규칙)에서 시도사무(조례)로 사무정비하고, 식의약안전과의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위임사무 신설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사무 등(5건) 기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9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산업과로 명칭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